

[변경 대비표]

1. 펀드명 : 우리 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 2022.08.05

3. 정정사유

- ① 부책임용전문인력 삭제
-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③ 증권 거래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기재
- ④ 정기갱신
- 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추가>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 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 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로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p>제9조(수익권의 분할)</p> <p>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p>	<p>제9조(수익권의 분할)</p> <p>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p>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p>제14조(수익자명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수익자명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p>	<p>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신설></p>	<p>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p>
<p>오기 정정</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제외)</p> <p>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제외)</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p>	<p>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p> <p>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p>	<p>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p> <p>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p>

	<p>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p> <p>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p> <p>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제23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p> <p>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p>5~7. <신설></p>	<p>제23조(운용행위 감시의무 등)</p> <p>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제25조(판매가격)</p> <p>②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p>	<p>제25조(판매가격)</p> <p>②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p>

	<p>한다.</p> <p>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④ 각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청구는 다음의 정함에 따른다.</p> <p>2. 우리 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p>다.</p> <p>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④ 각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청구는 다음의 정함에 따른다.</p> <p>2. 우리 템플턴 글로벌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p>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제26조(환매업무)</p> <p>⑦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제26조(환매업무)</p> <p>⑦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제27조(환매가격)</p>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제27조(환매가격)</p> <p>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오기 정정	<p>제28조(환매연기)</p> <p>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 전의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8영업일 전의 날)과</p>	<p>제28조(환매연기)</p> <p>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의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영업일 전의 날)과 그 권리</p>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 청구를 한 경우	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 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한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 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 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 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 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 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 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자본시장법 개 정사항 반영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 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 등록기관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 행령 반영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 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 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 행령 개정사항 반영, 오기 정 정	제39조(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 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 차대조표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제39조(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 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 무상태표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자본시장법 개 정사항 반영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 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 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수익자 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 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 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거나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수익자에 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 정사항 반영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추가>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 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 송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 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 시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 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황 을 거부하기로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운용보고서, 신탁업자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 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 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의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 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 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 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정기갱신 [요약정 보]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운 용 전문인력 -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운 용 전문인력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부책임운 용전문인 력 삭제 [요약정 보]	운용전문인력 부책임: 윤수로	운용전문인력 부책임: 삭제
부책임운 용전문인 력 삭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 운용전 문인력>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 운용 전문인력>

및 모두 자신탁의 부책임운 용전문인 력 삭제	부책임: 윤수로	부책임: 삭제
정기갱신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기업공시 서식 개 정사항 반영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신설>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증권 거래 비용 및 기타 금융 비용 기재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등 주식 기재사항 추가
자본시장 법 시행 령 개정 사항 반 영	제4부. 3.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추가>	제4부. 3.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채권평가 회사 사 명 변경	제4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채권평가	제4부.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자산평가
자본시장 법 개정 사항 반 영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전자등록기관
자본시장 법 및 시 행령 반 영	제5부. 3. 나. (2) 수시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추가>	제5부. 3. 나. (2) 수시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정기갱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

	를), 운용 전문인력 -	를), 운용 전문인력 정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부책임용운용전문인 력 삭제	운용전문인력 부책임: 윤수로	운용전문인력 부책임: 삭제